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14 선고 2020가단58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0. 5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8,959,965원 및 그중 28,759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11. 11.부터, 그중 29,901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12. 8.부터, 각 2020. 1. 28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 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홍도

별지